

# 金代 ‘郎君’ 관련 문제 고증

李玉君\* · 趙永春\*\*

번역: 김태순\*\*\*

- 
1. 金朝의 ‘郎君’이 모두 ‘종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金조의 郎君은 또한 관리의 칭호였다
- 

초록: 많은 학자들이 金代에 사용된 ‘郎君’이라는 용어가 金대의 ‘종실’·‘황족’·‘完顏氏 남성 황족’에 대한 호칭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金代에 ‘郎君’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모두 ‘종실’이었던 것은 아니며, 비종실 귀족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었다. 사실상 金代 ‘郎君’이라는 호칭의 함의는 두 가지로, 첫째, 일부 종실 및 비종실 귀족 청년 남자에 대한 칭호, 둘째, 尚書省·親王府에서 호위·案牘稽查·紙筆管理에 종사했던 사람들 및 이 두 기관에서 수시로 파견되었던 관원과 小吏에 대한 칭호이다.

핵심어: 金朝 郎君 宗室 貴族 官職

‘郎君’이라는 용어는 역사상 매 시기마다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한대에는 봉록이 천 석 이상의 관원이 그 자식을 郎에 임명하면서 郎君이라 칭했다. 한대 이후에는 부친을 섬기는 자식을 郎君이라 칭하면서, 郎君이 귀족청년 및 부호자제의 美稱으로 변하다가 귀족자제를 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수당 이후, 郎君의 함의는 더욱 많아져, 젊은이·주인의 아들·자신의 아들 혹은 사위·남편이나 연인(男) 등이 郎君이라 불렀다. 또한 궁중 內臣들도 자주 태자를 郎君이라 불렀으며, 新進士도 郎君이라 불

---

\* 요동 사범대학 역사문화어유학원 강사

\*\* 길림대학 문학원 역사계 교수

\*\*\* 북경사범대학 문학원 응용언어학 박사과정

렸다. 遼朝 초기에는 귀족자제를 郎君이라 불렀고, 후에는 몇몇 관아에 郎君官을 두게 되면서 郎君이 일종의 관직명이 되었다. 金朝는 遼의 영향을 받아 귀족자제를 郎君이라 칭하고 몇몇 관아에도 郎君官을 두는 등, 郎君이라는 용어에 귀족자제와 관직명 등 여러 함의가 부여되었다.

이제까지 금대 이전에 사용된 ‘郎君’이라는 용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지만, 금대의 郎君에 대한 연구는 적어 李錫厚의 「金朝的‘郎君’與‘近侍’」<sup>1)</sup>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金朝的‘郎君’與‘近侍’」를 읽고 난 후,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아 본고에서 금대 郎君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정확하지 못한 부분은 독자들의 비평과 가르침을 구한다.

## 1. 金朝의 ‘郎君’이 모두 ‘종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金代에 사용된 郎君이라는 용어가 금대의 ‘종실’·‘황족’·‘完顏氏 남성 황족’에 대한 호칭이라고 여긴다. 陳述은 “여진의 풍속에 의하면 황제의 아들로부터 族子까지 모두 郎君이라 칭한다.”<sup>2)</sup>고 하였다. 李錫厚는 大金皇弟都統經略郎君行記 碑文을 고증하여 “여진 건국 이후 종실을 郎君이라 칭했다.”<sup>3)</sup>는 결론을 내렸다. 景愛는 금대에 “郎君이 종실귀족만의 호칭이 되어, 비종실 성원들은 郎 또는 郎君이라 불릴 수 없었다.”<sup>4)</sup>라 하였다. 崔文印은 『大金國志』의 “郎君 吳矢가 반란을 꾀하여 路虎가 연좌되어 주살되었다.”라는 조목을 분석하면서 “其人(吳矢)非郎君”<sup>5)</sup>에서의 吳矢는 遼의 투항장수로, 금대의 종실이 아니므로 郎君이라 칭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 崔文印 또한 郎君이 금조의 종실만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張作耀 등 또한 “금의 종실자제는 郎君이라 칭해졌는데, 권력이 막강해 卿相이라도 郎君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했고, 郎君은 답례할 필요가 없어 주인이 노비를 대하듯 하였다.”<sup>6)</sup>라 하였다.

확실히 현재 전해지는 관련 사적의 상당수가 금대의 종실을 郎君이라 칭한다. 徐

1) 李錫厚, 1995 「金朝的‘郎君’與‘近侍’」, 『社會科學輯刊』 5.

2) 陳述, 2000 「契丹舍利橫帳考釋」, 『燕京學報』 8, 北京大學出版社.

3) 李錫厚, 앞의 논문.

4) 景愛, 2008 「歷史上的金兀朮」,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면.

5) 宇文懋昭 撰, 『大金國志校證』 권27, 「開國功臣傳」(崔文印 點校, 1986, 中華書局, 383면).

6) 張作耀 등 주편, 2000 『中國歷史辭典2책』, 國際文化出版公司, 864면.

夢莘의 『三朝北盟會編』 권3에는 여진에서 유래한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학자 三上次男은 그것을 ‘女真記事’라 칭했고,<sup>7)</sup> 후에 崔文印이 『大金國志校證·附錄』에 그것을 수록하면서 ‘女真傳’으로 고쳤다. 女真傳의 기록 또한 종실을 郎君이라 칭한다. “종실을 모두 郎君이라 한다. 대소사를 모두 郎君이 총괄했는데, 卿相이라도 말 앞에서 절해야 했으며 郎君은 답례하지 않아 노예를 부리듯 하였다.”<sup>8)</sup> 작자 미상의 『北風揚沙錄』· 宇文懋昭의 『大金國志』· 楊循吉의 『金小史』 등의 관련 기록 및 『三朝北盟會編』의 기록도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청대의 阿桂도 『滿洲源流考』에서 “금대에는 종실을 모두 郎君이라 칭했다.”<sup>9)</sup>라 하였고, 李有棠도 『金史紀事本末』에서 “금대에는 종실을 모두 郎君이라 칭했다.”<sup>10)</sup>라 하는 등, 모두 『三朝北盟會編』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sup>11)</sup>

7) 三上次男(金啟孫 옮김), 1984 『金代女真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 396면.

8) 徐夢莘, 『三朝北盟會編』 권3(2008, 上海古籍出版社, 19면). 이하 『會編』으로 표시.

9) 阿桂 등撰, 『滿洲源流考』 권17, 『國俗二·政教附字書』(孫文良·陸玉華點校, 1988, 329면).

10) 李有棠, 『金史紀事本末』 권11, 『規取隴蜀』(崔文印 정리, 1980, 中華書局, 231면).

11) 일본학자 三上次男은 『三朝北盟會編』의 女真記事가 『北風揚沙錄』에서 온 것이며, 陳樂素가 『三朝北盟會編考』에서 女真記事가 李燾의 『四系錄』에서 왔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다(『金代女真研究』, 441면). 劉浦江은 『關於金朝開國史真實性質疑』(1998 『歷史研究』 6기)에서 三上次男의 관점을 답습하여 “陳樂素는 이것이 李燾의 『四系錄』에서 인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徐夢莘 본인이 각종 여진 관련 기록에 근거하여 충실한 것이며, 『松漠記聞』· 『亡遼錄』· 『北風揚沙錄』 등을 참고하였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會編』이 『北風揚沙錄』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견해는 더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徐夢莘은 학문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여 인용하는 책마다 출처를 분명히 달았음에도, 이 단락을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전체 책의 인용서 목록에도 『北風揚沙錄』이 없다. 『北風揚沙錄』에 대해 살펴보면, 元代 이전 각종 목록서에 著錄이 보이지 않으며 누군가 인용했던 기록도 없다. 元末明初 陶宗儀가 처음 이 책을 『說郭』叢書에 수록하였으나 누가 편찬하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四庫全書』 및 『四庫全書總目提要·存目』에도 소개되지 않았다. 黃虞稷의 『千頃堂書目』 권5, 『別史類』에서 처음으로 이 책 “한 권이 金國의 始末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으나 편찬인은 밝히지 않았다. 厲鶚의 『遼史拾遺』引錄에도 이 책의 편자가 무명씨로 되어 있다. 清 倪燦·盧文弨의 『補遼金元藝文志』에서는 이 책을 金朝 조목에 넣으면서 “편찬인을 모른다”고 하였다. 錢大昕은 이 책을 『元史藝文志·雜史類』(『二十五史補編·補元史藝文志』)에 넣었는데, 이로 인해 후대 사람이 이 책을 元人이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清人들이 『說郭』를 重編하였을 때, 이 책을 宋 陳准撰이라 바꿨다. 昌彼得은 『說郭考』에서 清人들이 『說郭』를 重編하면서 “宋 陳准撰이라고 하였으나 그 책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책에서 ‘本朝 建隆 2년에 비로소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으니 宋人이 편찬한 것이 틀림없다.’”(1980, 臺北文史哲出版社, 213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는 涵芬樓의 『說郭』을 보면 “本朝 建隆 2년”이 아니라 “宋朝 建隆 2년”이라 되어 있어, 이 책을 송인이 편찬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듯 하다. 혹 宋元人이 『會編』의 여진 관련 기록을 모아서 『北風揚沙錄』으로 만든 것인지도 역시 알 수 없다. 이렇게 출

徐夢莘의 『三朝北盟會編』에는 금조와 관련하여 “종실은 모두 郎君이라 칭한다”, “卿相이 모두 말 앞에서 절하고 郎君은 예를 취하지 않았다” 등의 기록이 있다. 비록 금조의 역사적 실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금에 대한 송대 일부 사람들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宋人들은 자주 금대의 종실을 郎君이라 칭했다. 예를 들어 完顏宗望(斡離不·窩里孛·斡里雅布, 太祖의 아들)을 ‘大聖皇帝次子郎君’<sup>12)</sup>·‘皇子郎君’<sup>13)</sup>·‘二郎君’<sup>14)</sup> 등으로, 完顏昌(撻懶·達懶, 穆宗의 아들)을 ‘達蘭郎君’<sup>15)</sup>·‘撻懶郎君’<sup>16)</sup>·‘撻辣郎君’<sup>17)</sup>·‘托落郎君’<sup>18)</sup>·‘監軍郎君’<sup>19)</sup> 등으로, 完顏昌의 아들을 ‘星哈都郎君’(薩罕圖郎君)<sup>20)</sup>·‘勝花都郎君’<sup>21)</sup>으로, 撒離喝(撒刺喝·撒離合·朶·薩里罕·薩里幹, 安帝의 6대손)을 ‘薩里罕郎君’<sup>22)</sup>으로, 完顏宗敏(窩里混·阿骨保·阿魯補·鄂爾和, 太祖의 아들)을 ‘自在郎君’<sup>23)</sup>으로, 宗幹(斡本, 太祖의 서장자)을 ‘骨倫郎君’<sup>24)</sup>으로, 金太祖의 아우 韶瓦(碩哈)를 ‘郎君’<sup>25)</sup>으로, 金太宗의 형제를 ‘郎

차가 불분명한 이 책을 徐夢莘이 인용한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것 같다. 『大金國志』·『金小史』·『滿洲源流考』·『金史紀事本末』 등 책의 관련 기록은 모두 『三朝北盟會編』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12) 『大金吊伐錄校補』(金少英 校補, 李慶善 정리, 2001, 中華書局) 39편, 「回書誓文及差康王少宰出質」, 133면; 41편, 「回奏宋主」, 138면; 44편, 「宋少主新立誓書」, 146면.
- 13) 『大金吊伐錄校補』 45편, 「宋少主與左副元帥府報和書」, 150면; 50편, 「宋主回書」, 160면; 55편, 「遣李梶持寶貨物折充金銀書」, 172면; 56편, 「又書」, 175면; 57편, 「宋主為分畫疆界書」, 178면; 59편, 「宋主回書」, 183면; 60편, 「又書」, 186면; 62편, 「宋主遣報謝使副回書」, 192면; 66편, 「宋主回謝書」, 204면; 67편, 「又書」, 205면; 70편, 「宋主遣計議使副書」, 212면; 71편, 「又乞放肅王書」, 215면; 79편, 「宋主再乞免割三鎮書」, 230면; 『會編』 권50, 「宣和錄」, 381면.
- 14) 『大金吊伐錄校補』 44편, 「宋少主新立誓書」, 146면; 『宋史』 권66, 「五行志」, 1449면.
- 15) 李心傳, 『建炎以來系年要錄』 권16, 「秀水間居錄」(1956, 中華書局, 334면). 이하 『要錄』으로 표시; 周應合, 『景定建康志』 권48(1986, 臺北: 商務印書館, 文淵閣四庫全書本 영인본 489책, 652면).
- 16) 『會編』 권118(2008, 上海古籍出版社, 867면).
- 17) 『會編』 권176, 1273면; 『會編』 권220, 「秀水間居錄」, 1585면; 羅大經, 『鶴林玉露』 권5甲편(1983, 中華書局, 79면).
- 18) 『要錄』 권30, 「趙立傳」, 593면; 王明清 輯, 『揮塵後錄』 권9(1961, 中華書局上海印發, 197면).
- 19) 『會編』 권222, 「張公行實」, 1601면.
- 20) 『要錄』 권148, 2388면.
- 21) 『大金國志校證』 권12, 「熙宗孝成皇帝四」, 176면.
- 22) 『要錄』 권131, 2111면.
- 23) 『會編』 권18, 「金虜節要」, 128면; 『大金國志校證』 권2, 「太祖武元皇帝下」, 31면.
- 24) 『會編』 권12, 「茅齋自敘」, 85면.
- 25) 『會編』 권4, 「茅齋自敘」, 30면; 『會編』 권15, 「燕雲奉使錄」, 105면.

君<sup>26)</sup>으로, 宗翰(粘罕·粘沒喝·粘哥)등을 ‘郎君<sup>27)</sup>’으로, 宗翰의 아들을 ‘設野馬郎君<sup>28)</sup>’으로 부른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송대인들이 금조 종실을 郎君이라 많이 칭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며, 금조의 비종실을 郎君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三朝北盟會編』·許亢宗의 『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建炎以來系年要錄』·傅雱의 『建炎通問錄』·范仲熊의 『北記』 등에서는 모두 完顏希尹(兀室·悟室·烏舍·骨舍·穀神)을 ‘兀室郎君<sup>29)</sup>’·‘烏舍郎君<sup>30)</sup>’·‘固新郎君<sup>31)</sup>’·‘骨舍郎君<sup>32)</sup>’·‘左監軍兀室郎君<sup>33)</sup>’ 등으로 칭했다. 또한 洪皓의 『鄱陽集·贈彥清』의 “문하에 깃든지 일 년 가까이, 郎君의 높은 뜻은 엷은 구름 낀 하늘같네. 돌연 한 마디로 삼국을 평안케 했으니, 아름다운 이름 만고에 전해지리”, 『彥清生辰』의 “어깨의 짐 내려놓은 지 얼마 못 되어, 郎君의 덕이 두루 미치기를 빌었네. 어머니 생각하면 연로하여 반 붉은 머리, 유학자가 되어 학문 알아 蕭선생님께 부끄럽네. 3년 동안 交鄰의 道를 묻지 않았으니, 萬리가 어찌 알까 複命할 시기를. 南國의 人情도 멀지 않으니, 시를 지어 먼 곳 그리워하며 서로 의심하지 않네.”<sup>34)</sup> 등의 시에서 말하는 郎君은 完顏希尹의 아들 彥清을 칭한다. 完顏希尹은 ‘歡都의 아들’<sup>35)</sup>로, 『金史·宗室表』에서는 “金은 초기에 完顏 十二部가 있었는데, 후에 모두 部로 氏를 삼았다. 사관의 기록에서는 종실이라 칭하기도 하고 完顏이라 칭하기도 했다. 完顏이라 칭한 경우도 두 종류인데, 同姓 完顏은 대개 疏族으

26) 『會編』 권97, 『宣和錄』, 717면; 『會編』 권196, 1413면; 『會編』 권198, 1429면.

27) 『會編』 권2, 政和 2년 9월 27일 丙子, 14면.

28) 趙永春 編注, 1995 『奉使遼金行程錄』, 『呻吟語』, 吉林文史出版社, 197면.

29) 『會編』 권20, 145면, 147면; 『會編』 권25, 183면; 趙永春 위의 책, 『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 이 行程錄의 작자는 陳樂素가 고증한 바에 의하면 鐘邦直이 맞다. 이 고증은 매우 정확하여 학계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宋人이 遼金에 사신으로 가서 집필한 ‘語錄’ 중 많은 수는, 大使 본인이 아니라 大使의 명의를 빌려 다른 이가 작성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논저의 작자를 볼 때 署名만 확인하거나(실제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않고), 古籍을 정리할 때 注만 정리하고 원문은 되도록 고치지 않는 것처럼, 관련 史書의 기록을 따라 署名이 있는 許亢宗을 작자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0) 阿桂等 撰, 『滿洲源流考』 권12, 『疆域五·金上京』(孫文良·陸玉華 點校, 1988, 遼寧民族出版社, 184면).

31) 『要錄』 권1, 『建炎通問錄』, 26면.

32) 『會編』 권61, 『北記』, 459면.

33) 『會編』 권110, 『建炎通問錄』, 804면.

34) 洪皓, 『鄱陽集』 권1(1986, 臺北商務印書館, 文淵閣四庫全書本 영인본, 1133책, 396-397면).

35) 脫脫等 撰, 『金史』 권73, 『完顏希尹傳』(1975, 中華書局, 1684면). 이하 『金史』로 표기.

로, 石土門·迪古가 그 예이며, 異姓 完顏은 대개 部人으로, 歡都가 그 예이다.”<sup>36)</sup>라 하였다. 『金史』에 의하면 完顏希尹의 가족은 종실이 아닐 뿐 아니라 同姓 完顏의 ‘疏族’도 아닌 ‘異姓 完顏’이다. 따라서 完顏希尹 및 그 부친 歡都, 조부 劬孫, 증조부 石魯 모두 종실표에 들지 않았으며, 시조 函普나 그 두 형제의 후손이라 언급되지도 않았다. 陳述의 『金史拾補五種』에서도 完顏希尹을 종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完顏希尹이 종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完顏希尹을 郎君이라 부른 것에서 종실만을 郎君이라 칭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李心傳의 『建炎以來系年要錄』에는 “郎君 仲和什이라는 자가 반란을 꾀하여 大理의 감옥에 갔고, 이 일에 宗盤 등이 연루되었다.”<sup>37)</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宇文懋昭의 『大金國志』 기록도 대체로 비슷한데, ‘郎君 仲和什’만이 ‘郎君 吳矢’로 바뀌었다.<sup>38)</sup> ‘仲和什’·‘和什’·‘吳矢’는 동일인으로 봐야 할 것이며, 『金史』·『三朝北盟會編』·『遼史』 등에는 ‘吳十’이라 쓰여 있다. 崔文印은 『大金國志』의 ‘校證’에서 『遼史』권28 「天祚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天慶 6년(1116) “5월……東京州縣 族人 痕孛·鐸刺·吳十…… 등 13인이 모두 여진에 투항하였다.” 여기서 吳矢를 “遼의 투항장”이라 하였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그는 또 “그는 郎君이 아니다”<sup>39)</sup>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要錄』과 『大金國志』에서는 분명 吳矢를 郎君이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책의 기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금조의 郎君에 대한 송인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吳矢가 郎君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吳矢는 분명 종실이 아니었음에도 송인들이 그를 郎君이라 칭한 것은, 송인들이 말하는 금조의 ‘郎君’은 종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종실 및 금조에 투항한 거란 장수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러한 예는 많다. 苗耀는 『神麓記』에서 金人 完顏昌(撻懶)이 都元帥에서 파면된 뒤로 집안 사람들과 모의하여 祁州에 가 죄를 묻고자 하였는데, “親信 거란인 召哲郎君이 그 모의를 알고 兀術에게 고했다.”<sup>40)</sup> 라고 하였다. 張匯의 『金虜節要』에서는 “阿骨打가 죽자 粘罕이 군사를 전담하여, 여진 萬戶 溫敦郎君 蒲盧虎·賽里郎君 契丹都統

36) 『金史』 권59, 「宗室」, 1359면.

37) 『要錄』 권130, 紹興 9년 7월 己亥, 2095면. 四庫全書本에도 ‘郎君仲和什’을 ‘郎君和什’이라 하였다.

38) 『大金國志校證』 권27, 「蒲路虎傳」, 382면.

39) 『大金國志校證』 권27, 「蒲路虎傳」校證[18], 394면.

40) 『會編』 권197, 「神麓記」, 1421면.



馬五를 파견해 居庸關에서 동쪽 오랑캐들을 맞게 하였다.”<sup>41)</sup>라 하였다. 『三朝北盟會編』의 기록에서는 紹興 31년(1161) 12월 28일, “淮北 壽春府의 거란인 男三郎君, 天平軍 節度使·河北路 安撫制置使인 王任, 檢校少保·天雄軍 節度使·河北等路 安撫使인 王友直이 군마 팔백여 명을 데리고 앞으로 왔다.”<sup>42)</sup>라 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召哲郎君’·‘賽里郎君’·‘男三郎君’이 누구인지 아직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거란인이며 종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록을 보면 송인이 기록한 금조의 郎君은 비종실 중 異姓 完顏뿐만 아니라 여진족 이외의 거란인 등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人들 또한 종실을 郎君이라 많이 칭했다. 宗望(斡離不, 太祖의 아들)을 ‘皇子郎君’<sup>43)</sup>·‘太子郎君’<sup>44)</sup>·‘二太子郎君’<sup>45)</sup>으로, 完顏昂(景祖의 아우 孛黑의 손자)을 ‘金牌郎君’<sup>46)</sup>으로, 撒離喝(安帝의 六代孫)을 ‘啼哭郎君’<sup>47)</sup>으로, 宗弼(兀術, 太祖의 아들)의 아들 完顏悲를 ‘郎君’<sup>48)</sup>으로, 世宗의 아들인 完顏永中의 아들 愛王大辨(石古乃)을 ‘郎君’<sup>49)</sup>으로 부른 것 등이 그 예이다. 『大金國志』에서는 또한 “대공신 粘罕(宗翰)·斡離不(宗望)·兀術(宗弼)·蒲路虎(宗盤)·兀室(希尹)·撻懶(完顏昌)의 무리를 나라 사람들이 郎君이라 부른다.”<sup>50)</sup>고 하였는데, 이들 중 完顏希尹(兀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실이다.

금인들도 종실 중의 일부를 郎君이라 불렀지만 종실만을 郎君이라 부르고 비종실은 郎君이라 칭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金史 관련 저작을 보면 금인들이 일부 비

41) 『會編』 권34, 「金虜節要」, 181면.

42) 『會編』 권248, 紹興 31년 12월 28일, 1780면.

43) 『會編』 권28, 210면; 『會編』 권29, 「靖康城下奉使錄」, 212면; 『金文最』 권86, 「褚承亮墓碣」(1990, 中華書局, 1254면).

44) 『會編』 권23, 「北征紀實」, 171면; 『會編』 권36, 271면; 『會編』 권44, 330면.

45) 『會編』 권53, 398면.

46) 『金史』 권84, 「奔睹(昂)傳」, 1886면.

47) 『要錄』 권32, 620면; 『宋史』 권366, 「吳玠傳」, 11409면; 『大金國志』 권10, 「熙宗孝成皇帝二」, 148면; 『鶴林玉露』 1권 丙編, 「齊東野語卷」 15 등 책에서 모두 撒離喝이 宋軍에 격파되어 “두려워 울자, 金人들이 그를 啼哭郎君이라 불렀다.”라고 하였다. 이 책들에서는 비록 金人들이 撒離喝을 ‘啼哭郎君’이라 칭했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직접 기록한 관련 서적은 찾을 수 없다. 宋人들이 金人을 폄하하여 만들어낸 칭호인 듯하므로, 고증이 더 필요하다.

48) 『大金國志校證』 권17, 「世宗聖明皇帝中」, 240면.

49) 『大金國志校證』 권19, 「章宗皇帝上」, 260면; 偽書라 여겨지는 『南遷錄』에서도 ‘愛王’을 ‘郎君’이라 칭한다.

50) 『大金國志校證』 권3, 「太宗文烈皇帝紀一」, 37면.

종실에게도 郎君의 호칭을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大金國志』의 관련 기록에서는 ‘國人’(金人)들이 兀室(希尹)을 郎君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1979년에 고고학자들은 完顏希尹 가족묘지 제3묘구(完顏守道 묘구)에서 ‘阿里郎君墓’ 碣石과 碣石 파편들을 발견했고, 제1묘구(完顏守貞 묘구)에서는 ‘眇看郎君之墓’ 석비를 발견하였다.<sup>51)</sup> 이것을 보면 金인이 完顏希尹뿐 아니라 그의 손자 完顏守道·完顏守貞 또한 郎君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完顏希尹의 가족이 종실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부연하지 않겠다.

이외에 金人들은 또한 裴滿忽睹·蒲察石家奴 등의 비종실을 郎君이라 불렀다. 『金史·忽睹傳』에서는 “中京의 留守가 되자 더욱 교만하고 방자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못 하는 일이 없었다. 여러 猛安 부자 자제를 扎野로 선발하고 재물을 얻어, 당시 ‘閑郎君’이라는 호를 얻었다.”<sup>52)</sup>라 하여 忽睹를 ‘閑郎君’이라 불렀다. 『金史』를 살펴보면 忽睹는 그 부친이 “裴滿達(본명 忽撻)로, 婆盧木部人이며”, “인품이 순박하고 곧고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고”, 그의 딸은 熙宗에게 시집 가서 ‘悼平皇后’가 되었다고 한다.<sup>53)</sup> 忽睹는 외척으로 종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三朝北盟會編』 등의 책에는 金 熙宗 때 韓昉이 지은 조서가 있는데, “皇叔 虞王 宗英(太宗의 아들 斛沙虎)·滕王 宗偉(太宗의 아들 阿魯補)·殿前左副點檢 渾睹·會寧少尹 胡實刺·郎君 石家奴·千戶 述孛離古楚 등이 다투어 재앙의 시작이 되었다.”<sup>54)</sup>라 하며, 石家奴를 郎君이라 칭했다. 『金史』에 기록된 ‘魯國公 蒲察石家奴’·‘烏林答石家奴’·‘福山縣令 烏林答石家奴’는 모두 종실이 아니다. 그 중 烏林答石家奴는 海陵시기의 守城軍官으로, 세종이 즉위하도록 도왔다. 福山縣令 烏林答石家奴의 정치 공적은 주로 宣宗 貞佑년간에 보이는데, 조서에 나오는 郎君 石家奴는 아닐 것이다. 魯國公 蒲察石家奴만이 太祖부터 熙宗시기까지 살았다. 蒲察部石家奴는 太祖의 딸과 결혼하여 부마 石家奴라 칭해지기도 하였다. 그는 海陵王 完顏亮 때 魯國公에 봉해지고, 世宗 大定년간에 “크게 칭찬받은 공신으로 衍慶宮에 초상화가 걸렸으나”, “異姓의 신하가 우선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衍慶亞次功臣’의 서열이 되었으니,<sup>55)</sup>

51) 王世華, 1996 『完顏希尹家族墓地略考』,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吉林省 舒蘭市 委員會 文史資料委員會, 13면, 9면.

52) 『金史』 권120, 『世戚·忽睹傳』, 2615면.

53) 『金史』 권120, 『世戚·裴滿達傳』, 2615면.

54) 『會編』 권116, 紹興 5년 정월 12일 條, 1199면; 洪皓, 1986 『松漠紀聞』, 吉林文史出版社, 46면; 趙永春, 앞의 책, 『呻吟語』, 206면.

55) 『金史』 권80, 『阿離補傳』, 1811면.



종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大定 10년(1170)에 새겨진 奴哥馬郎君之墓<sup>56)</sup>에 나오는 奴哥馬郎君 및 劉鳳翥가 고증한 金代 大定 16년(1176)에 새겨진 거란 大字 李愛郎君墓誌(이전에는 應曆碑라 잘못 불렀다.)<sup>57)</sup>에 나오는 ‘李愛’도 종실이 아니다.

송인이든 금인이든 모두 금조의 종실 중 일부 귀족을 郎君이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비종실 중 일부 귀족 또한 郎君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제껏 충분히 설명했듯, 금조의 郎君은 종실만의 專稱이 아니라 종실 및 비종실 등 귀족 청년 남자의 통칭이다. 王昶은 『金石萃編』 권154에 皇弟都統經略郎君行紀 비문 및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을 실은 뒤, “郎君은 金人 貴臣을 일컫는 말로, 撒離喝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sup>58)</sup>라 주석을 달았다. 또한 ‘郎君’이라는 용어에 대해 『辭源』에서는 “여진 종실 및 귀족 대신이 郎君의 호칭으로 불렀다.”<sup>59)</sup>, 臺北 三民書局에서 출판된 『大辭典』에서는 “여진 종실 및 귀족 대신의 칭호”<sup>60)</sup>, 『漢語大詞典』 또한 “금 종실 및 貴臣의 칭호”라 설명한다.<sup>61)</sup> 王昶의 주석 및 이 사전들은 비록 금조의 郎君에 대해 논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조의 郎君이 종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貴臣’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설명이며, 단지 금조의 郎君이 관직명이기도 하였다는 설명이 빠진 점이 부족할 따름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부분에서 논하기로 한다.

## 2. 금조의 郎君은 또한 관리의 칭호였다

몇몇 학자들이 비록 금조의 郎君이 종실뿐만 아니라 비종실 ‘貴臣’까지 포함하는 호칭이라는 것에 주의하게 되었지만, 이 호칭이 또한 일종의 官稱이었다는 것까지는 지적하지 않았다. 사실상, 금조는 요나라의 제도를 물려받아 일부 관아에 郎君官을 설치하였다. 『金史』에 나오는 ‘郎君’이라는 말은 상당수가 관직명이었다. 「從坦

56) 遼寧省 박물관 편저, 2000 『遼寧省博物館藏碑誌精粹』, 文物出版社, 218면.

57) 劉鳳翥·王雲龍, 「契丹大字‘耶律昌允墓誌銘’之研究」, 2004 『燕京學報』 17기, 北京大學出版社.

58) 『續修四庫全書』 891책, 『史部·金石類』, 『金石萃編』 권154(1995, 上海古籍出版社, 2면).

59) 1983 『辭源』 4책, 北京: 商務印書館, 3102면.

60) 1985 『大辭典』 下, 臺北: 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 4818면.

61) 1989 『漢語大詞典』 3책,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621면.

傳」의 “從坦은 종실의 자제로 大安시기에 尚書省 祇候郎君을 지냈다.”<sup>62)</sup> 「選舉志」의 “東宮妃 호위 10명은 大定 13년(1173)에 모두 親王府 祇候郎君을 지냈다.”<sup>63)</sup> 「百官志」의 “尚書省 架閣庫 管勾官 관할 하에 ‘走馬郎君 오십 인’이 있었다.”<sup>64)</sup> 등의 기록을 보면 金朝 尚書省·親王府·架閣庫 등 관료기구에 ‘尚書省 祇候郎君’·‘親王府 祇候郎君’·‘走馬郎君’ 등의 郎君官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尚書省 祇候郎君’은 ‘省祇候郎君’·‘省郎君’ 등으로도 불렸는데, 尚書省에 설치된 祇候郎君官이었다. 『金史·百官志』에서는 金朝는 尚書省 관원 尚書令·左丞相·右丞相·左丞·右丞·左司郎中·右司郎中·左司員外郎·右司員外郎의 아래에 “尚書省 祇候郎君 管勾官을 설치하였는데, 종7품으로 祇候郎君을 관장하여 祇候郎君의 출입과 과견을 살폈다.”고 하였다.<sup>65)</sup> 금조가 상서성에 설치한 ‘祇候郎君’은 ‘尚書省 祇候郎君 管勾官’의 관할에 직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史·選舉志』省祇候郎君 조목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定 3년(1163), 袒免 이상 친족으로서 이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한 자 및 일품관의 아들을 在班祇候에 오르게 하고, 30개월이 되면 직급을 옮기기로 제정하였다. 초임은 정·종7품과 대우가 같았고, 재임의 경우 상서성에 보고하였다. 內祇在班은 初·次任은 정·종8품, 三·四任은 종7품과 같이 대우하고 이후에는 상서성에 보고하였다. 班祇在班은 初任은 9품, 次·三任은 정·종8품, 四·五任은 종7품과 같이 대우하고 이후에 상서성에 보고하였다. 班祇在班은 初任은 9품, 次·三任은 정·종8품, 四·五任은 종7품과 같이 대우하고 이후에 呈省하였다. 이상 三等은 또한 60개월이 차면 각각 一重씩 옮겼다.”<sup>66)</sup> 또한 『金史·百官志四·百官俸給』百司承應俸給 조목에서는 “六部等通事·誥院令史·國史院書寫·隨府書表·親王府 祇候郎君·典客署引接書表는 錢粟 八貫石, 絹 二匹, 綿 二十兩을 받는다. 走馬郎君과 一品子孫은 十貫石, 內祇는 八貫石, 班祇는 七貫石을 받고, 또한 絹 二匹, 綿 二十兩을 받는다.”라 하였다.<sup>67)</sup> 이상의 기록에서 ‘尚書省 祇候郎君’이 또한 ‘在班祇候’·‘內祇在班’·‘班祇在班’의 세 등급으로 나뉘고, 최소한 구품관의 대우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親王府 祇候郎君’은 또한 ‘王府 祇候郎君’·‘府郎君’ 등으로도 불렸는데, 親王府

62) 『金史』 권122, 「從坦傳」, 2661면.

63) 『金史』 권53, 「選舉志三」, 1187면.

64) 『金史』 권55, 「百官志一」, 1218면.

65) 위의 책.

66) 『金史』 권53, 「選舉志三」, 1181면.

67) 『金史』 권58, 「百官志四」, 1347면.

에 설치된 祗候郎君官이었다. 『金史·百官志三』 親王府屬官 조목에 기록된 親王府屬官에는 傅·府尉·司馬·文學·記室參軍·諸駙馬都尉 등이 있고, 王府 祗候郎君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타 紀·傳·志 및 百官志의 기타 조목에서는 수 차례 王府 祗候郎君이 언급되었다. 상술한 『金史·選舉志三』에는 東宮妃 護衛들이 “모두 親王府 祗候郎君이었다”, 『金史·百官志四·百官俸給』에는 “親王府 祗候郎君·典客 署引接書表는, 錢粟 八貫石, 絹 二匹, 綿 二十兩을 받는다.”라 되어 있고, 이 밖에도 『選舉志二』에서는 金인들이 “벼슬자리에 나가는 방법이 많았는데, 제정된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기록하면서 ‘王府 祗候郎君’에 임명되는 방법이 “世宗 때에 정해졌다”<sup>68)</sup>라고 하였다. 『金史·選舉志四·廉察之制』는 金朝가 廉察을 제정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면서 ‘王府郎君’을 언급했다. “비로소 선발시험으로써 등용하였고, 體察을 할 필요가 없었다.”<sup>69)</sup> 이러한 기록을 통해 ‘王府 祗候郎君’이 일종의 관직명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金史·完顏元宜傳』에는 또한 大定 18년(1178) 扎里海가 자청하여, 海陵王 完顏亮의 죄 때문에 그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趙王府 祗候郎君’이 되었다.<sup>70)</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扎里海는 大定 18년 이전에는 아직 郎君이 아니었다가 大定 18년 이후에 趙王府 祗候郎君官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趙王府 祗候郎君’은 일종의 관직명이라 봐야 할 것이다.

‘走馬郎君’이라는 용어는 『金史』에 단 세 차례 나온다. 첫째, 『金史·百官志一』에 尚書省 등의 기구 및 官員을 기재할 때 尚書省 架閣庫 管勾官 관할 하에 ‘走馬郎君 오십 인’<sup>71)</sup>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走馬郎君이 架閣庫 管勾官員의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金史·百官志一』 ‘尚書省 祗候郎君 管勾官’ 조목 아래에, “尚書省 祗候郎君 管勾官은 종7품으로 祗候郎君을 관장하며 그 출입과 파견을 살핀다.”라고 되어 있으며, 작은 글씨로 “承安 2년(1197)이전, 走馬郎君을 擬注했다. 泰和令에서는 左右女直都事로 겸임한다고 규정하였다. 正大년간에 가까운 사람들로 바꿔 임용했다.”<sup>72)</sup>라 注가 달려 있다.<sup>73)</sup> 이 注는 承安 2년 이전에 尚書省 祗候郎君 管勾官이 주로 走馬郎君 중에서 선발되었으므로, 走馬郎君의 지위가 尚書省 祗

68) 『金史』 권52, 「選舉志二」, 1158면.

69) 『金史』 권54, 「選舉志四」, 1203면.

70) 『金史』 권132, 「完顏元宜傳」, 2832면.

71) 『金史』 권55, 「百官志一」, 1219면.

72) 『金史』 권55, 「百官志一」, 1218면. (역주: 擬注는 관원을 선발할 때 추천된 사람을 먼저 상서성에 등록하고 일정 기간 뒤 다시 그 재능에 따라 관직을 정하는 제도이다.)

73) 위의 책.

候郎君 管勾官보다 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金史·百官志四』 ‘百官俸給’ 조목에 붙은 ‘百司承應俸給條’에서는 走馬郎君과 一品子孫은 十貫石, 內祇는 八貫石, 班祇는 七貫石을 받고, 또한 絹 二匹, 綿 二十兩을 받는다.”<sup>74)</sup>라 하여, 走馬郎君과 일품관 자손이 똑같이 국가에서 하사하는 봉록을 누렸다는 것과, 그 지위가 대략 內祇(內祇在班)와 班祇(班祇在班)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술한 『金史·選舉志三』 ‘省祇候郎君’ 조목에는, 초임 ‘班祇在班’은 9품, ‘內祇在班’은 중8품, ‘在班祇候’는 중7품<sup>75)</sup>이라 기록되어 있다. 만약 走馬郎君의 지위가 ‘班祇在班’과 ‘內祇在班’보다 높았다면, ‘在班祇候’와 지위가 비슷하여 중7품관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金史·百官志一』에서는 또한 ‘尚書省 祇候郎君 管勾官’이 承安 2년 이전에는 走馬郎君 가운데 선발되었다고 했는데, 尚書省 祇候郎君 管勾官은 중7품관이기 때문에 즉, 지위가 尚書省 祇候郎君 管勾官보다 낮은 走馬郎君은 중7품관 이하의 관리여야 한다. 또한 『金史·百官志一』 ‘架閣庫’ 조목에 의하면 走馬郎君은 架閣庫管勾와 同管勾의 관리 하에 직속되는데, 架閣庫管勾는 정8품, 同管勾는 중8품<sup>76)</sup>이므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架閣庫管勾와 同管勾보다 지위가 낮은 走馬郎君은 구품관을 넘지 않을 것이다. 『金史·百官志四』에서는 또한 중9품관은 ‘錢粟 一十貫石’<sup>77)</sup>으로, ‘走馬郎君·一品子孫 十貫石’과 대우가 같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走馬郎君이 중9품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尚書省 祇候郎君’·‘親王府 祇候郎君’과 ‘走馬郎君’ 등 郎君관리의 직무에 대해서는 『金史』에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관련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金史·百官志一』에는, “尚書省 祇候郎君 管勾官은 祇候郎君을 관장하여 그 출입과 파견 업무를 살폈다.”<sup>78)</sup>라고 되어 있다. 尚書省 祇候郎君 管勾官은 尚書省 祇候郎君의 직속상관으로 그 직무가 尚書省 祇候郎君이 구체적으로 맡아야 하는 사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즉 尚書省 祇候郎君은 주로 尚書省을 출입하는 행인 검사, 尚書省 안전 보장, 尚書省의 수시 파견 임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이 책에는 또한 走馬郎君이 예속되어 있는 架閣庫管勾와 同管勾의 직책이 “左右司大程官이 文牘을 追付하는 것을 살피고, 小都監에게 紙筆을 제공한다.”<sup>79)</sup>라고 하였다. 架閣庫管勾와 同管勾는 走馬郎君

74) 『金史』 권58, 「百官志四」, 1347면.

75) 『金史』 권53, 「選舉志三」, 1181면.

76) 『金史』 권55, 「百官志一」, 1218면.

77) 『金史』 권58, 「百官志四」, 1344면.

78) 『金史』 권55, 「百官志一」, 1218면.

79) 위의 책.

의 직속상관으로 그들의 직무 범위 또한 走馬郎君이 구체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였을 것이다. 이로 보아 走馬郎君은 또한 案牘稽查·紙筆管理 등의 직책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金史·選舉志』의 기록에 의하면, “東宮妃 호위 열 명이 大定 13년(1173), 모두 親王府 祇候郎君이 되었다.”<sup>80)</sup>라 하여, 親王府 祇候郎君의 주요 직책이 親王 및 親王府 가족 호위 등의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尚書省 祇候郎君’·‘親王府 祇候郎君’과 ‘走馬郎君’의 주요 직책이 尚書省과 親王府 호위, 案牘稽查, 紙筆管理, 尚書省과 親王府의 수시 파견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 『金史·百官志四·百官俸給』에서는 親王府 祇候郎君·走馬郎君의 봉급을 ‘百司承應俸給’ 조목 아래에, ‘省祇候郎君’을 ‘燕賜各部官僚以下’ 조목 아래에 열거하고, ‘六部令·譯史·通事’와 병렬하였다. 이를 보면 親王府 祇候郎君과 走馬郎君이 百司承應人에 속하고, 尚書省 祇候郎君은 百官의 列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尚書省 祇候郎君’·‘親王府 祇候郎君’과 ‘走馬郎君’은 주로 종실에서 선임되었지만, 종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종실들도 포함되었다.

『金史·選舉志三』 ‘省祇候郎君’ 조목의 기록에는 “大定 3년(1163), 袒免 이상 친족으로서 이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한 자 및 一品官子”<sup>81)</sup> 가운데 선임하는 것으로, 尚書省 祇候郎君은 종실 袒免 이상 皇親과 일품관 자식 중에서 선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袒免親은 고대에 친속관계를 확인하던 斬衰·齊衰·大功·小功·總麻의 五服 이외에 正服이 없던 먼 친척을 말한다. 『禮記·大傳』에서는 “四세가 總服을 입는 것은 상복이 궁해진 까닭이며, 五세가 袒免을 하는 것은 同姓의 은혜가 줄어든 것이고, 六世는 親屬의 관계가 끊어진다”<sup>82)</sup>라 하였고, 『唐律疏義』에서는 “高祖의 親兄弟, 曾祖의 堂兄弟, 祖의 再從兄弟, 父의 三從兄弟, 자신의 四從兄弟·三從侄·再從侄孫, 그리고 總麻絕服 외의 사람들(의 상례에서는) 袒免한다.”<sup>83)</sup>라 하였다. 王元亮 『唐律釋文』에서는 “袒免은 상복의 지극히 輕淺한 구별이다. 『禮記』에 의하면, 總麻之外 친척은 喪死 등이 있을 때, 범례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왼쪽 소매를 걷고(袒) 관을 벗어 머리를 묶는다(免). 그래서 袒免이라 하는 것이다.”<sup>84)</sup>라 하였다. 皇族 袒免親은 비록 五服之外에 속하지만, 皇族의 五世親屬으로, 여전히 황

80) 『金史』 권53, 「選舉志三」, 1187면.

81) 『金史』 권53, 「選舉志三」, 1181면.

82) 『禮記』 권34, 「大傳」(1980 『十三經注疏』本, 中華書局, 1507면).

83) 長孫無忌 등撰, 『唐律疏義』 권40, 「戶婚疏」(劉俊文 點校, 1983, 中華書局, 264면).

84) 長孫無忌 등撰, 『唐律疏義』附錄 王元亮 重編 『唐律釋文』(劉俊文 點校, 1983, 中華書局, 622면).

족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袒免以上親은 五服之外의 袒免親과 五服之內의 친족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袒免以上親 가운데 尚書省 祇候郎君을 선임한다는 것은 바로 종실 중에서 祇候郎君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금조는 世宗 때 이 원칙을 제정한 이래, 후대까지 변함없이 지켜왔다. 예를 들어 章宗 明昌 원년(1190) 8월 “敕麻吉은 皇家의 袒免之親으로, 특별히 尚書省 祇候郎君에 임명되어, 여전히 변함없이 시행되는 제도가 되었다.”<sup>85)</sup>라 한 것은 것은 이 원칙을 지켜 尚書省 祇候郎君을 선발한 것이다. 이 원칙 아래 많은 종실들이 祇候郎君으로 선발되었다. 昭祖의 玄孫 崇成이 大定25년(1185) “章宗이 原王이었을 때”, “本府 祇候郎君에 선발”<sup>86)</sup>된 것, 安帝의 5대손 婆盧火의 아들 朮忽兒,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났다. 스무 살에 本班 祇候郎君都管의 신분으로 정벌에 나가 공을 세워, 修武校尉에 임명되었다.”<sup>87)</sup> “從坦은 종실의 자손이다. 大安년간에 尚書省 祇候郎君에 선발되었다”<sup>88)</sup> 등이 그 예이다.

금조는 비록 袒免 이상의 친족, 즉 종실 중에서 祇候郎君을 선발한다는 원칙을 제정하였지만, 袒免 이상의 친족 중에서만 祇候郎君을 선발할 수 있고 袒免 이하의 친족 중에서는 선발할 수 없다고 제정하지는 않았다. 위에서 인용한 사료에서 볼 수 있듯 금조는 袒免 이상 친족 중에서 祇候郎君을 선발한다고 제정하는 동시에 ‘일품관의 아들’ 가운데서도 祇候郎君을 임명한다고 제정하였다. 금조의 일품관이 모두 종실이었던 것은 아니다. 외적인 渤海大族 李石은 大定 7년(1167) ‘司徒’로 승진하고, 大定 10년(1170)에 또한 ‘司徒·御史大夫’에서 ‘太尉·尚書令’<sup>89)</sup>으로 승진하였는데, 司徒·太尉·尚書令은 모두 정1품 관원이다. 徒單克寧은 여진인이기는 했지만 完顏氏가 아니므로 비종실의 신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大定 14년 樞密副使에서 平章政事로 승진하고, 大定 20년(1180)에 또 平章政事에서 尚書右丞相<sup>90)</sup>으로, 大定 21년(1181)에는 右丞相에서 左丞相으로, 곧이어 左丞相에서 樞密使로, 大定 26년(1186)에는 司徒·樞密使에서 太尉·尚書左丞相으로, 大定 28년(1188)에는 太尉·左丞相에서 太尉 겸 尚書令<sup>91)</sup>으로 승진하였다. 그가 임직했던 平章政事·尚書右丞

85) 『金史』 권9, 「章宗本紀一」, 215면.

86) 『金史』 권65, 「昭祖子傳」, 1542면.

87) 『金史』 권71, 「婆盧火傳」, 1639면.

88) 『金史』 권122, 「從坦傳」, 2660면.

89) 『金史』 권6, 「世宗紀上」, 146면.

90) 『金史』 권7, 「世宗紀中」, 174면.

91) 『金史』 권8, 「世宗紀下」, 203면.



相·尚書左丞相·樞密使는 모두 중1품, 司徒·太尉·尚書令은 모두 정1품이다. 紇石烈胡沙虎·僕散師恭 또한 完顏氏가 아니다. 胡沙虎가 임직했던 太師·尚書令<sup>92)</sup>은 정1품, 僕散師恭가 임직한 太尉는 정1품, 右丞相·樞密使<sup>93)</sup>는 중1품이다. 世宗朝 거란인 完顏元宜(耶律元宜)<sup>94)</sup>·移刺道<sup>95)</sup>는 모두 중1품의 平章政事 등을 역임했다. 이로 보아 금조 때는 비종실 여진인 뿐만 아니라, 발해인, 거란인 등도 일품관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비종실이 일품관이 되었던 예는 너무 많아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렵다. 金朝는 ‘일품관 아들’ 가운데 祇候郎君을 선발했으므로, 이러한 비종실 일품관도 포함했을 것이다. 이러한 비종실 일품관의 아들이 祇候郎君으로 선발될 경우, 물론 모두 비종실 郎君에 속했다.

『金史·選舉志二』의 기록에 의하면 大定 17년(1177), “吏部에 명하여, 宰執의 아들과 在省宗室郎君이 令譯史 시험을 보기 원할 경우, 매년 시험을 한 차례 실시하도록 하였다. 令譯史 시험은 院試로 보충하는 외에, 總麻袒免宗室郎君 密院으로 보충할 수 있었다.”<sup>96)</sup> 여기에 쓰인 ‘在省宗室郎君’이라는 말은, 在省非宗室郎君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만약 尚書省에서 직무했던 郎君이 모두 종실이었다면 ‘在省宗室郎君’이라는 말이 필요 없었을 것이며, ‘省郎君’이라 지칭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 않았겠는가? 이것 역시 尚書省 祇候郎君 가운데 분명 비종실 郎君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金史·選舉志三』 大定 17년(1177) “시험을 통해 總麻袒免 이상 宗室郎君을 보충하기로 제정하였다.”<sup>97)</sup>, 『金史·選舉志四』 “大定 28년(1188), 合門祇候·筆硯承奉·奉職·妃護衛·東宮入殿小底·宗室郎君·王府郎君·省郎君 가운데서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體察을 하지 않았다.”<sup>98)</sup> 등의 사료에서 말하는 ‘宗室郎君’ 또한 모두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郎君’을 모두 종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尚書省 祇候郎君’과 ‘親王府 祇候郎君’ 가운데 비종실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또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完顏撒改는 上京 納魯渾河人으로, 그 선조들은 兀冷窟河에 살았는데, “天眷 元年(1138), 本班祇候郎君詳穩의 며슬

92) 『金史』 권132, 「紇石烈執中傳」, 2837면.

93) 『金史』 권5, 「海陵本紀」, 106면.

94) 『金史』 권89, 「移刺子敬傳」, 1988면.

95) 『金史』 권88, 「移刺道傳」, 1968면.

96) 『金史』 권52, 「選舉志二」, 1170면.

97) 『金史』 권53, 「選舉志三」, 1176면.

98) 『金史』 권54, 「選舉志四」, 1203면.

을 받았다.”<sup>99)</sup> 『金史』에는 또한, 大定18년(1178)“扎里海로 趙王府 祗候郎君을 충당 하였다.”<sup>100)</sup>고 하였는데, 扎里海는 『金史·宗室表』 및 『金史拾補五種』에 보충된 종실 인원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종실이 아닐 것이다. 金朝의 ‘尚書省 祗候郎君’·‘親王府 祗候郎君’·‘走馬郎君’이 모두 종실에서 충당된 것이 아니며 비종실 가운데 일품관 등 귀족 자제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徐夢莘의 『三朝北盟會編』 “종실을 모두 郎君이라 하였다. 대소사를 모두 郎君이 총괄하였고, 卿相이라도 모두 말 앞에서 절해야 했으며 郎君은 예를 취하지 않아 종을 부리듯 하였다.” 등 여진 관련 기록들의 잘못된 영향으로 학계에서 주로 금조의 郎君이 ‘종실’·‘황족’·‘金朝 完顏氏 남성 황족’의 칭호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금조의 郎君이 모두 종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일부 비종실 귀족도 포함된다. 사실상 『三朝北盟會編』에 수록된 각종 사적을 포함하여, 많은 기록자들은 금조의 일부 종실을 郎君이라 칭하는 동시에 일부 비종실 귀족도 郎君이라 하였다. 금조의 郎君은 종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금대 ‘郎君’이라는 호칭의 함의는 두 가지로, 첫째, 일부 종실 및 비종실 귀족 청년 남자에 대한 칭호, 둘째, 尚書省·親王府에서 호위·案牘稽查·紙筆管理에 종사했던 사람들 및 이 두 기관에서 수시로 파견되었던 관원과 小吏에 대한 칭호이다.

99) 『金史』 권91, 「完顏撒改傳」, 2011면.

100) 『金史』 권132, 「逆臣傳」, 2832면.